

【기계/물리-1】 위험기계·기구 취급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

사고개요

(사고일시) '17.7.14.(금), 16시 50분경

(사고장소) ○○대학교, 건축재료실험실

(사고내용) 콘크리트를 기포콘크리트제조장치에 넣고 혼합하는 과정의 실험을 진행한 후 기기 내부에 잔존하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도중 동력장치 미차단 상태에서 배출구에 손(칼날을 보호하지 못하는 고무장갑 착용)을 넣었고, 나비 믹서 교반기(블라이드)에 고무장갑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절단

(피해현황) 연구활동종사자(박사과정) 왼손 중지·약지 1마디 절단

<기포콘크리트제조장치 및 나비 믹서교반기>



발생원인

- 회전체에 대한 비상정지장치 및 인터록장치 등 방호장치 미설치
-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하여 장비별 사용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, 연구활동종사자 고무장갑 착용
- 청소작업 중 “조작금지” 표지 등 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, 동력 미차단

예방대책

- 회전체 취급 시 위험사항에 대비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 정지장치 및 인터록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, 날 부위는 직접 손을 넣지 않고, 스크래퍼와 같은 이물질 제거용 보조도구 사용
- 위험기계·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, 장비 가동 중 접근 또는 조작금지표지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
-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하여 취급 시 장갑 착용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장갑에 의한 말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
[위험기계·기구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]



<안전보건표지>



<비상정지장치>



<스크래퍼>